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0일 이주용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, 제34조에 의거하여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수정(안 제3조)

1) 2019년 : 월 2,220,000원

2) 2020년 ~ 2022년

· 전년도 월정수당 + (전년도 월정수당 ×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 3월 13일 제6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월 1,541,000원이었던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,220,000원으로 하고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 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 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